2022-10-07 판례 검색은 빅케이스

광주지방법원 2017. 9. 1. 선고 2017고단2334 판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통신매체이용음란)

광 주 지 방 법 원

판 결

사건 2017고단2334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통신매체이 용음란)

피고인 A

검사 김혜경(기소), 정성욱(공판)

변호인 변호사 B(국선)

판결선고 2017. 9. 1.

주 문

- 1.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.
- 2. 피고인에게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40시간의 이수를 명한다.

이 유

범죄사실

피고인은 2017. 3.22. 02:55경 광주 서구 C건물, 1404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폰을 이용하여 발신자 전화번호가 전화 상대방에게 나타나지 않게 하여 무작위로 전화번호를 누르는 방법으로 피해자 $D(\phi, 254)$ 에게 전화하여 피해자에게 "계속 서서 잠을 잘 수가 없으니까 도와줘", 11 오늘 속옷 뭐입었어"라고 말하였다.

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 감을 일으키는 말을 피해자에게 도달하게 하였다.

증거의 요지

- 1. 피고인의 법정진술
- 1.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
- 1. 통화기록 캡쳐 사진

법령의 적용

1.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

2022-10-07 판례 검색은 빅케이스

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, 징역형 선택

1. 이수명령

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

1.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

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, 아동·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,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9조 제1항, 아동 .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 제1항 단서(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, 피고인의 연령과 가정환경 및 사회적 유대관계, 범행 전력, 범행의 내용과 동기, 범행의 방법과 결과,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,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의 예방효과, 피해자보호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볼 때 신상정보를 공개·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판단되므로, 피고인에 대하여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을 선고하지 아니한다.)

양형의 이유

아래와 같은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, 성행, 환경, 가족관계, 범행의 동기와 결과,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.

유리한 정상 : 피고인은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다.

불리한 정상: 피해자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다. 피고인은 성폭력범죄 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(통신매체이용음란)죄로 3차례 각 벌금형의 형사처벌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, 2015. 10. 28. 광주지방법원에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(통신매체이용음란)죄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, 2015. 11. 5.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집행유예 기간 중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는바, 재범의위험성이 크다.

신상정보 등록 및 제출의무

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,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,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 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.

파사 성인혜